



KIRA MEMBER' GUIDE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South Korea

Tel :
02-3415-6800

Fax :
02-3415-6899

Email :
kira@kira.or.kr

Homepage :
www.kira.or.kr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 건축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2022년 2월 3일 공포된데 이어, 8월 4일 시행됩니다.

의무가입 법제화의 취지는 건축사가 국민의 재산·생명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임에도 건축사가 겪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습·제도를 바로잡아 건축사로서 공정한 평가와 대가를 받는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건축사 여러분!

건축사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인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어떠합니까. 책임 소재를 묻는 자리에 내몰리는 과도한 법적 책임, 타 업계의 업역 침해, 열악한 업무대가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람 속의 촛불'과 같은 위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건축사 모두가 대한건축사협회를 주축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과 모순된 제도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우리의 위치·역할을 다시금 원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뀌고 왜곡된 사회인식도 바로잡아야 하며, 우리가 이제 그런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단지 건물을 설계하는 전문가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를 담당하는 삶의 설계자,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인,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토대를 만들어가는 국가 건축정책의 동반자 위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무가입 실현으로 우리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기반을 마련한 만큼, 협회도 우리 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러한 삶의 안정된 바탕 위에 건축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모쪼록 의무가입이 꽃 피고 열매 맺어 새로운 건축사의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큰 건축사의 미래를 그리는 새 시대와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석 정 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KIRA

MEMBER' GUIDE

**건축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 합니다**

CONTENTS

- 04 의무가입 추진배경
- 05 의무가입 실천계획
- 06 의무가입 기대효과
- 07 비전과 목표
- 08 회원의 혜택
- 11 회원의 윤리
- 12 회원가입절차 안내
- 15 대한건축사협회
- 17 협회조직



BACKGROUND

의무가입 추진배경

1963년, 건축사제도가 생기면서 건축사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하면 건축사면허를 교부받아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하고 이와 동시에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37년간 운영되던 건축사법은 2000년 4월29일 ‘건축사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건축사의 협회가입이 임의화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의 취지와 달리 협회가입이 임의화 된 이후 건축사협회의 건축사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자격대여, 저가덤핑수주, 불공정행위, 건축사사무소 경영악화, 건축사보 인력난 등으로 건축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건축사는 전문 자격사 중 가장 수익이 낮고 어려운 직업군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동안 수년, 수십년 동안 쌓인 것으로 하나하나가 개별 사안이 아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모든 건축사가 본인의 명예뿐 아니라 건축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한 윤리규정안에서 함께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서로 도와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인이 되고자 합니다.

ACTION PLANS

의무가입 실천계획

대한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 완성을 위해 3단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STEP
01

自省 자성

윤리 바로 세우고
신뢰 강화 단계

윤리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당장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동하고 공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전제로 개정됐습니다. 정부, 국회, 관련 단체들이 아직도 우리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의무가입의 가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STEP
02

回復 회복

건축사 위상 회복,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습과 제도 탈피

건축사의 실추된 위상을 원위치로 돌려놓고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습과 제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존재조차 미미한 건축사의 현실, 추락하는 업무대가, 과도한 법적 책임,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STEP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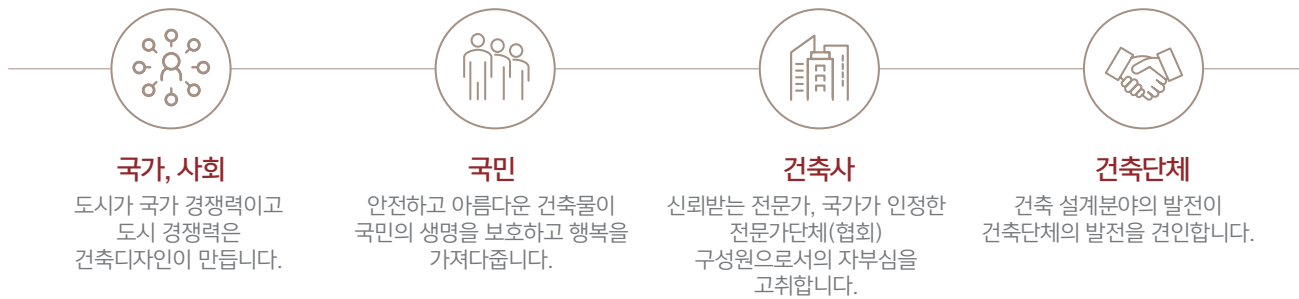
跳躍 도약

건축사 위상 강화와
업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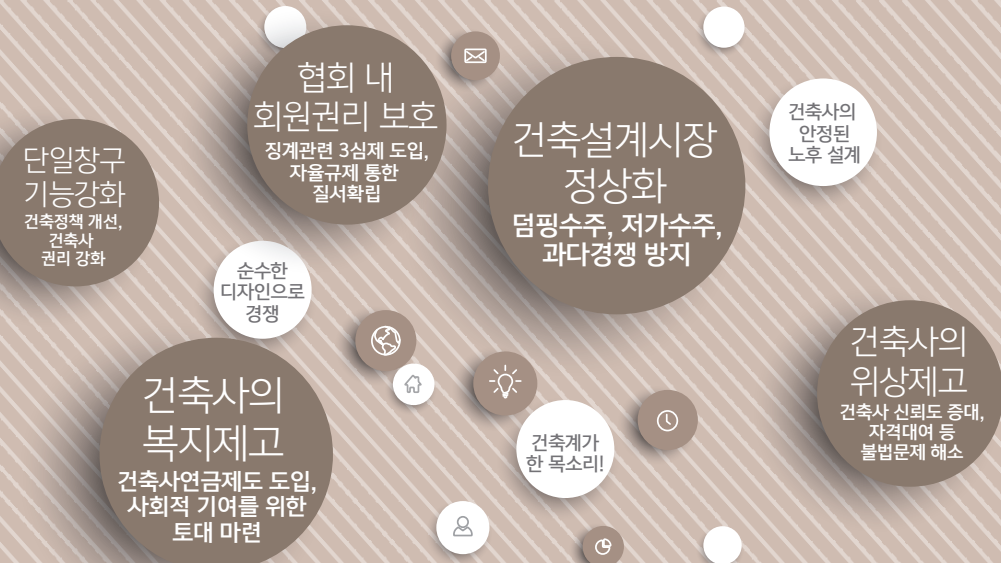
건축사 위상 강화와 업역 확대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1, 2단계를 바탕으로 건축사는 5000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계승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국가건축 정책 동반자로서 국가와 국민 속에 당연히 우뚝 서야 합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K-ARCHITECTURE로 나아가야 합니다.

EXPECTED EFFECT 의무가입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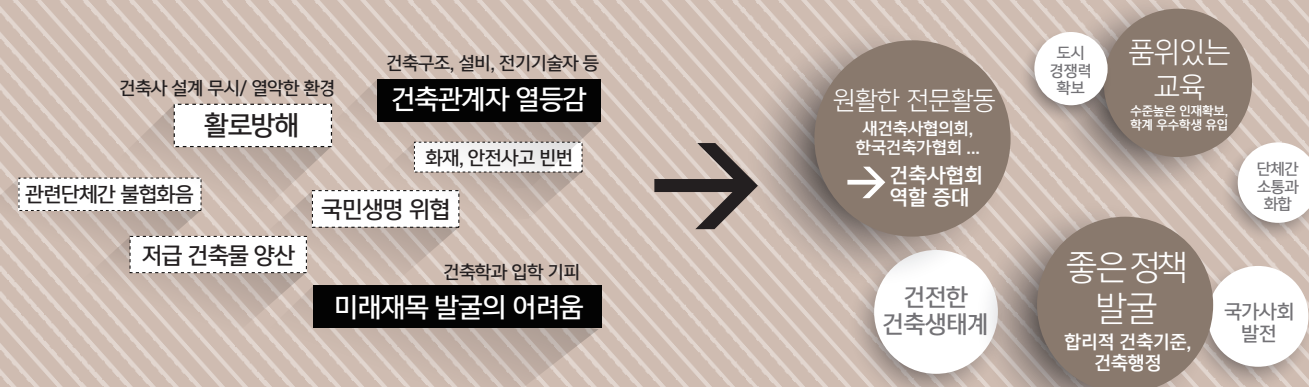
국민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건축사 회원 모두가 좋아집니다!



건축관련 단체 모두가 발전합니다!



VISION & TARGET 비전과 목표

대한건축사협회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 제공함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국민, 건축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의무가입 후속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EMBER' BENEFIT

회원의 혜택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의 권익증진과 건축사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실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법률 상담 및 지원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회원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합니다.

건축법령 유권해석 (질의회신)

건축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협회에서 직접 해석 또는 정부 및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건축분쟁 상담 및 지원

회원이 건축관계자 및 발주처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드리고 검토의견서를 제공해드립니다.

02. 사무소 운영 컨설팅

세무·회계·노무 자문

회원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무, 회계, 노무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자문을 해드립니다.

건축사사무소 컨설팅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관련 각종 관계법령, 인허가 절차, 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건축사 업무 전문교육

건축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사실무교육, 건축물관리점검자교육, 해체공사감리자교육 등의 전문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03. 최신 건축정보 제공

최신 법령정보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하여 건축 관련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관련 표준서식

설계, 공사감리, 해체공사감리, 건축물정기점검 등 회원업무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업무지침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협회발행 발간자료

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월간 건축사지 및 건축사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협회 건축연구원의 각종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합니다.

입찰 정보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 감리용역 등의 각종 입찰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정보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04. 건축정보센터 운영

건축자재정보센터

건축 설계시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의 검색과 추천자재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자재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건축자재의 기본 스펙과 시험성적서, 인증서, CAD/BIM 디테일 등의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서비스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CAD/BIM 등 S/W와 각종 H/W를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05. 협회 의사결정기구 참여

협회 의사결정기구 참여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협회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외기관 위원 활동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LH, SH 등 지방공사, 공공건축가, 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의 건축 관련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06. 건축관련 행사 참여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 행사 참여

국회, 정부, 협회, 관련단체에서 주최하는 건축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포상 추천

정부 포상 및 각종 포상 시 회원중 우수한 공적이나 실적이 있는 회원을 추천하여 수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공헌사업 참여

건축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위상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활동, 장학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행사 및 국제건축전 출품

협회에서 주관, 교류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 참여 및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기회가 부여됩니다.

회원동호회 활동

회원의 단합과 취미활동 교류를 위해 축구, 등산, 마라톤, 사진, 미술, 골프, 바둑, 당구 등의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EMBER' ETHICS

회원의 윤리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

부당경쟁 등의 금지

덤핑, 금전 등의 제공, 강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의 수임을 시도하거나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 등의 금지

건축사 자격 명의를 대여 및 대여 알선하거나 건축사 20인 미만의 사무소에서 건축사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행위 거부

건축사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업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조언하여서는 안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및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직무 자긍심 고취

타인 존중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바탕으로 직업적 명성을 쌓아야 하며, 자신의 동료나 직원의 공헌을 인정하고, 다른 건축사나 작품을 부당하게 비판하거나 신용을 해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 및 대가기준 준수

건축사법에서 정한 업무 및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건축주에게 적절한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간 권리보호

강요금지

건축사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건축사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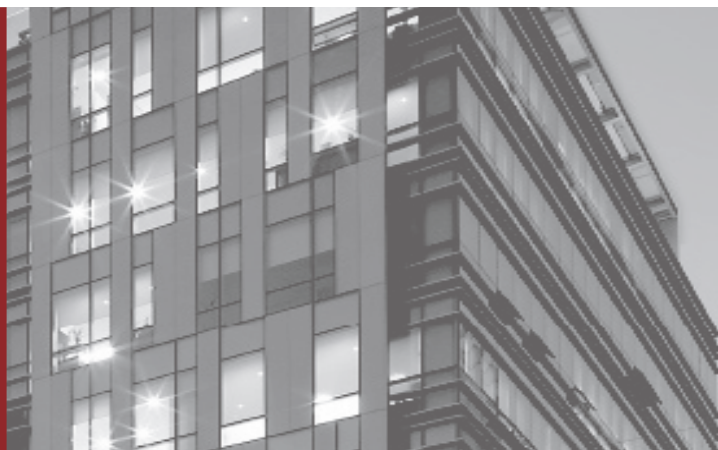
- 협회 외 다른 단체나 조직의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
- 정관에서 정한 입회비 외에 별도의 가입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건축사 업무상 다른 지역의 건축사를 차별하는 행위

※ 개정 건축사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MEMBER' GUIDE

회원이입절차 안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건축사는
'22.02.03. 개정·공포된 건축사법'에 따라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원이입 대상

-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대표건축사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
- ※ 재직건축사(소속건축사)는 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본인 희망시 가입 가능)

회원이입 기한

-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
- 현재 협회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는
'22년 8월 4일 이후 '23년 8월 3일까지 1년 이내 가입

회원이입 신고

- 시도건축사회 가입 신고 (본 협회에 자동가입 처리)
- ※ 지역건축사회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 결정

회원이입 절차



회원이입 제출서류

- ① 정회원 신고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 ④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 ⑤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 서식안내

- ①, ② : 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상단 협회소개 → 회원가입안내)
- ④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정회원 회비

구 분	납부 시기 (기한)	회비 기준금액
입 회 비	협회 회원 가입시	200만원
정회원(월정)회비	해당월분 매월 말일까지	25,000원/월

※ 시도건축사회 월정회비 별도



회원이입 및 회비 관련 문의처

건축사회	TEL	FAX
서 울	02-581-5717	02-523-2284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인 천	032-432-3381~4	032-437-3385
광 주	062-521-0025	062-528-0026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세 종	044-862-6636	044-862-6226
경 기	031-247-6129	031-242-7072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충 남	041-338-4088	041-338-4088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전 남	061-285-7563~4	061-785-7567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회원이입 안내

협회 정보관리국 실적관리팀 (02-3415-6851~4)

회비납부 안내

협회 기획총무국 재정팀 (02-3415-6816~9)

KIRA

MEMBER' GUIDE

회원가입 Q&A

Q1

협회 의무가입대상 건축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대표건축사가 가입대상입니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Q2

대표건축사가 아닌 재직건축사(소속건축사)도 협회 가입해야 하나요?

재직건축사(소속건축사)와 자격등록한 건축사 중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교수 등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협회 가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금번 개정된 건축사법은 2022년 8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가입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협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4

정해진 기간내에 협회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회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위반으로 국토부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Q5

협회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개설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행정구역상의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도건축사회에 가입하면 대한건축사협회에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Q6

본협회 및 시도건축사회 이외 지역건축사회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역건축사회 가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7

지역건축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나요?

지역건축사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KIRA

대한건축사협회



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근거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법률 제1536호(1963.12.16) 공포
건설부 건축시지령 413-5129호(1965.12.3) 인가 [창립일:1965년10월23일]

등록건축사

18,335명 (‘22년 5월 기준)

주요활동

-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건축관련 정책, 법령연구 및 제도개선
-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국제기구, 국가간 건축교류 및 정보교환
- 건축관련 간행물 발간사업 (월간 건축사, 건축사신문 등)
- 정부 위탁업무
 - 건축사자격등록관리 / 건축사교육 / 건축사 명부관리
 - 건설기술인경력관리 / 건축사실적관리 / 건축사보관리 / 건축사시험관리
- 건축문화진흥행사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건축의날
 - 한국건축문화대상·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 한국건축산업대전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및 한옥체험 행사
- 사회공헌사업
 - 재난안전지원단 / 사회봉사활동 / 장학사업 등

협회조직

조직

- 17개 시·도건축사회 135개 지역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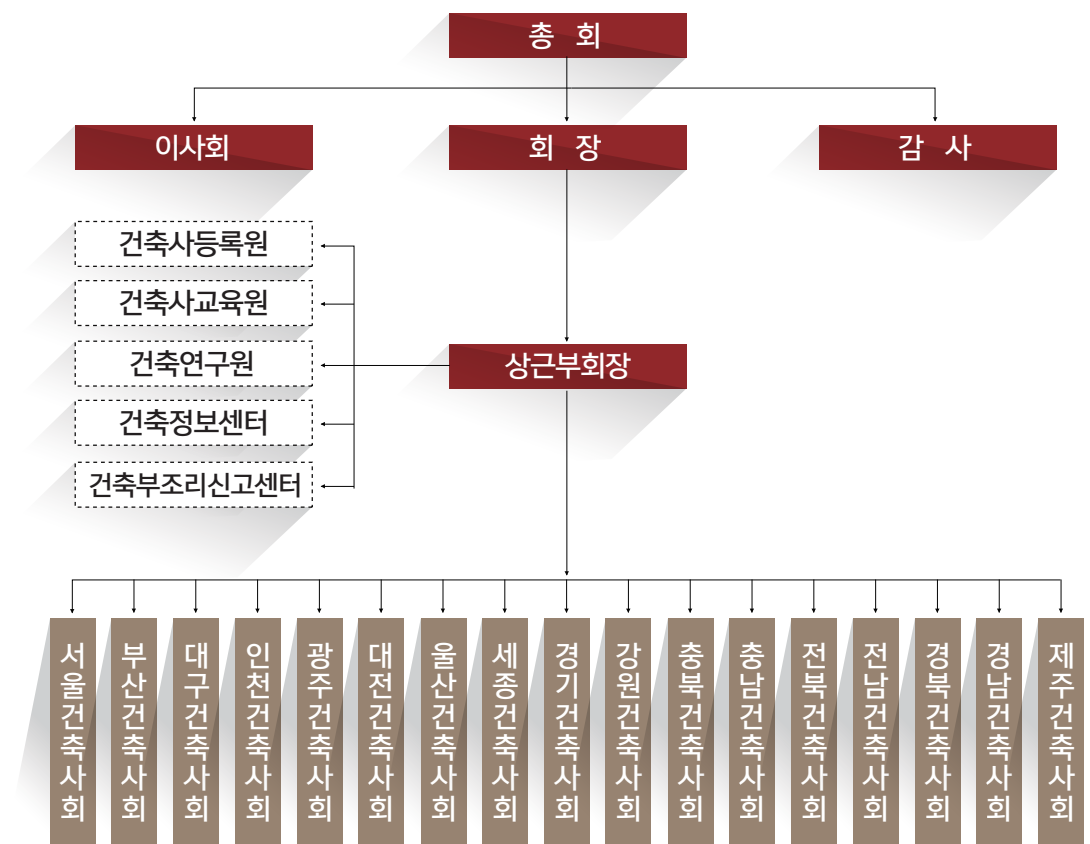
기구

- 건축연구원
- 건축사등록원
- 건축사교육원
- 건축정보센터
- 건축부조리신고센터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기관
-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기관
- 친환경교육기관
- 건축임의규제관행신고센터
- 건축글로벌 최고위과정
- 시민건축대학
- 어린이창의체험교실
-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 한국건축문화대상
-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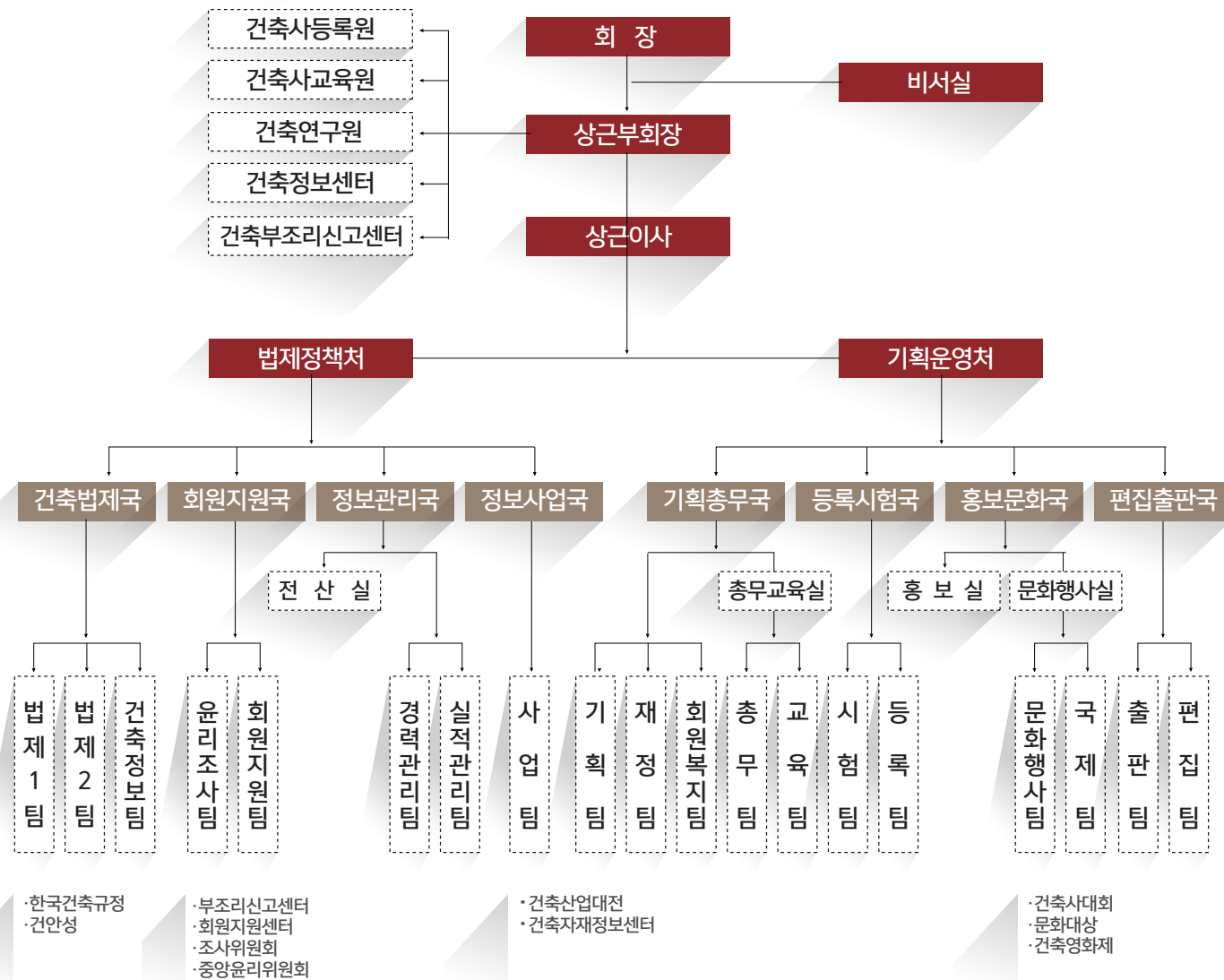
- 건축사공제조합
- 건축사신용협동조합

협회 조직도





사무처 조직 및 업무



법제정책처 (02-3415-내선번호)

건축법제국	법제1팀	- 건축법 관련 사항 (감리, 화재, 구조 및 재료, 설비 등) - 건축물관리법 관련 사항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6831 ~ 6834
	법제2팀	- 건축기본법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련 사항 - 건축사법 및 건축사업무 관련 사항 (의무가입, 총괄조정권 등)	6836 ~ 6838
	건축정보팀	-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위탁사업 운영 관련 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 관련 사항	6832 ~ 6834
	회원조사팀	-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축사 윤리확립 및 윤리위반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	6860 ~ 6861
회원지원국	회원지원팀	- 회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 고충민원 처리 대응 관련 사항	6839 ~ 6840
	전산실	- 협회 운영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전산장비 및 전산인프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882 ~ 6884
정보관리국	경력관리팀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인 제재처분 및 부실벌점 관리에 관한 사항	6843 ~ 6847
	실적관리팀	- 회원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사실적관리, 건축사보 관리에 관한 사항	6851 ~ 6854
정보사업국	사업팀	- 한국건축산업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 - 건축자재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876 ~ 6877

기획운영처 (02-3415-내선번호 / 홍보문화국·편집출판국 02-3416-내선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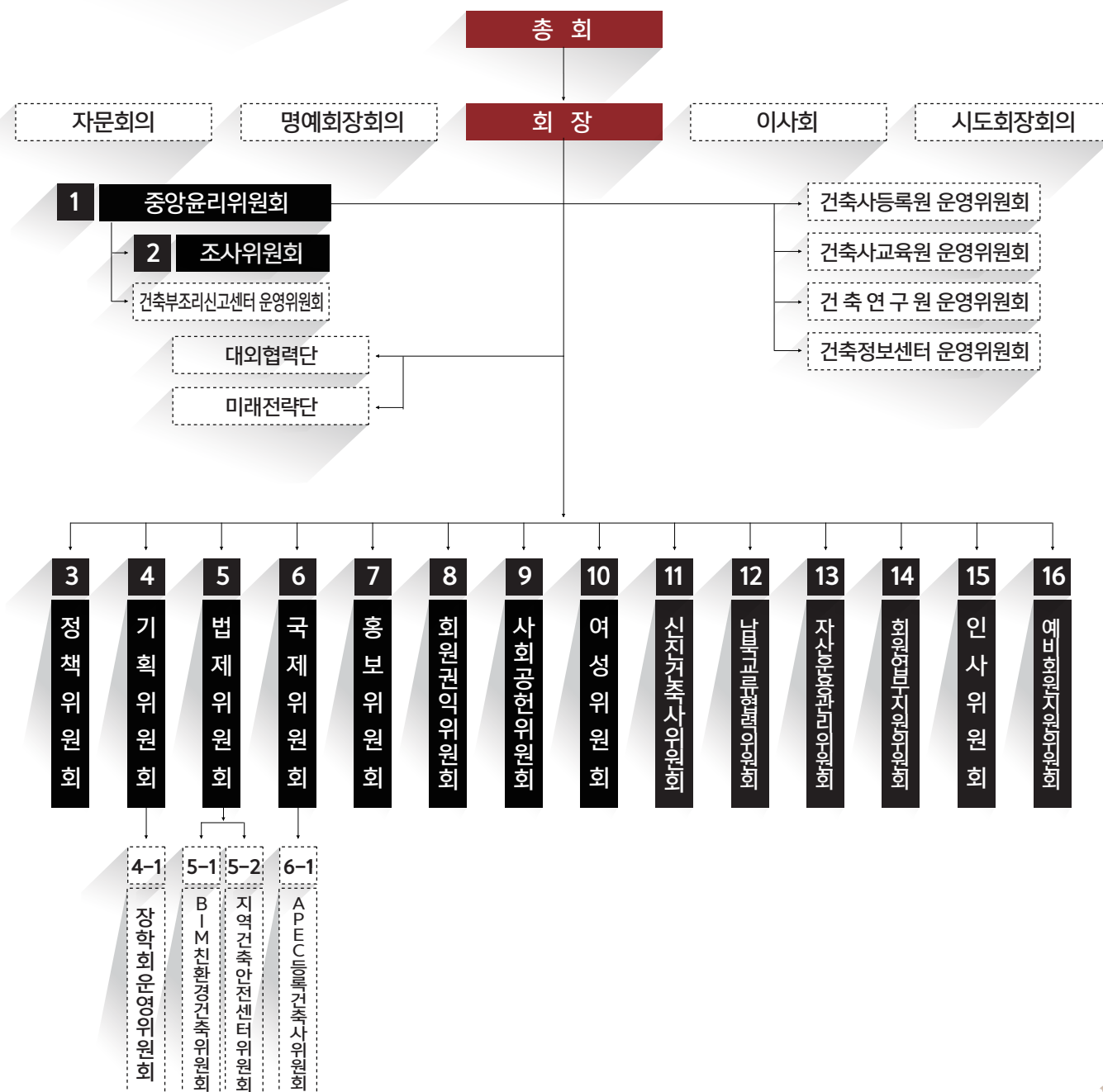
기획총무국	기획팀	- 협회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총회·이사회·시도건축사회회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823 ~ 6825
	재정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결산에 관한 사항 - 세무·회계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6816 ~ 6820
	회원복지팀	- 회원 복지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연금제도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총무팀	- 위원 위촉, 추천 및 후원, 상훈에 관한 사항 - 인사·복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6812 ~ 6815
총무교육실	교육팀	-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위탁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856 ~ 6859
	시험팀	- 건축사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사시험 예산편성(안)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6871 ~ 6875
등록시험국	등록팀	- 건축사자격 등록 및 갱신등록에 관한 사항 - 실무수련 신고에 관한 사항	6886 ~ 6889
	홍보실	-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언론 및 광고에 관한 사항	6905 ~ 6907
홍보문화국	문화행사팀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시행에 관한 사항 -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사항	6903 ~ 6904
	국제팀	- UIA, ARCASIA 업무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827 ~ 6828
편집출판국	출판팀	- 건축사 실무 관련 서적 출판에 관한 사항 - 기획출판 등 협회 출판물 발간에 관한 사항	
	편집팀	- 건축사지, 건축사신문 발간에 관한 사항 - 광고관리 및 기사취재에 관한 사항	6963 ~ 6966

법률/노무/회계 자문

법률분야	■ 송봉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02-3479-2398
	■ 김태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02-3476-3700
노무분야	■ 신항철 노무사	삼정노무법인	02-521-3588
회계분야	■ 황용현 회계사	광교회계법인	02-6952-0550



위원회 조직도



위원회 주요업무

1	중앙윤리위원회	■ 건축사윤리에 관한사항 및 회원 징계 심의·결정 등
2	조사위원회	■ 면허대여 · 불법 위반사례 조사를 통한 회원의 윤리의식 강화
3	정책위원회	■ 협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정관 및 제규정 제정 · 개정 관련업무
4	기획위원회	■ 협회 재정 및 기금운영 관리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5	법제위원회	■ 건축 관련 법령 제 · 개정 및 제도개선
6	국제위원회	■ 국제단체 교류 및 협력
7	홍보위원회	■ 협회 홍보정책 수립 / 홍보 · 방송 및 출판 등
8	회원권익위원회	■ 회원 권익보호 및 회원 교류협력 확대
9	사회공헌위원회	■ 사회 공헌사업 기획, 추진
10	여성위원회	■ 여성회원 업무지원 사업 및 친목 활동 강화
11	신진건축사위원회	■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의 업무 지원 및 인재육성 방안 연구
1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남북 건축문화 교류 추진 및 건축단체간 남북정책 정보교환
13	자산운용관리위원회	■ 회관시설(임대) 관리 및 운용 / 협회 자산 운용대책 수립
14	회원업무지원위원회	■ 회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및 세무 지원
15	인사위원회	■ 직원 인사 및 노무
16	예비회원지원위원회	■ 예비회원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 회원가입 촉진에 관한 사항